

WTO/DDA 반덤핑 협상 동향과
우리의 대응방안

2004. 6

K O T R A

통상전략팀

목 차

1. 협상 배경 및 목표	1
2.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.....	4
가. 제로잉 금지 / 4	
나. 재 심 / 7	
다. Fair Comparison / 11	
라. 정상가격 산정 / 17	
3.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.....	23
가. 향후 전망 / 23	
나. 우리의 대응방안 / 24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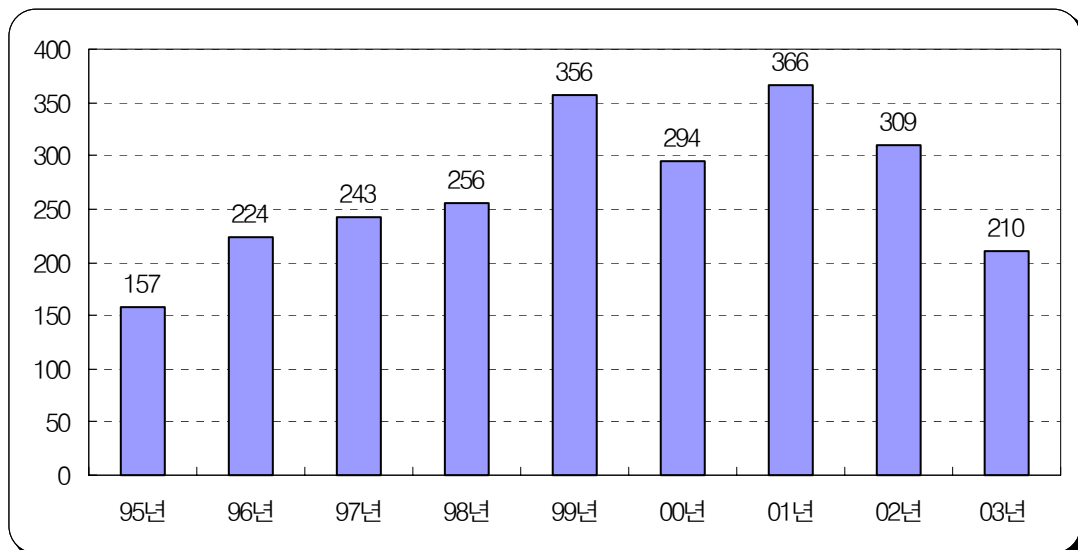
I. 협상 배경 및 목표

가. 협상 배경

□ WTO 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 조치 사용 증가

- 1995년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 9년간 전체 41개국(EU는 1개국으로 간주)에 의해 총 2,416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

<세계 반덤핑 제소 현황>



자료원 : Committee on Anti-dumping Practices, WTO

- 1980년대에 연평균 조사개시 건수는 138건에 불과하였으나, 1990년대에는 237건, 1999년과 2001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약 330건에 달함.
- '01년 이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, 최근 들어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증대

- WTO 147개 회원국 중 66%가 무역구제 입법을 통보하고, 7%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, 무역구제조치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반덤핑 조치 발동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.

○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 활용 비중이 급격히 증가

- 최근 들어 인도, 아르헨, 남아공 등 개도국들이 반덤핑 조치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. 특히 2003년 하반기 동안 최종판정이 내려진 총 107개의 반덤핑 규제 조치 중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%에 불과

□ WTO 분쟁해결기구(DSB, Dispute Settlement Body)에 제소된 케이스 중 약 21%가 반덤핑 조치(anti-dumping measures) 관련

- 2003년 말까지 WTO DSB에 제소된 케이스는 총 304건인데, 이중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제소된 것이 64건에 해당
- 이는 現 반덤핑 협정이 불명확한데 따른 조사당국의 자의성 개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.

- 현행 협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조사당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의성을 발휘가능
- 따라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덤핑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 대두하였으며, 도하협상에서 의제로 채택되기에 이름.

□ 반덤핑 협정 개정시 기본적인 틀과 개념은 유지

- 부시행정부는 DDA 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였으나, 국제적인 외교압력으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 내 개정에는 동의

- 미국은 자국산업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직면하였을 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자국의 법령을 마련해 둠.
- 따라서, 반덤핑 협정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경우 자국의 법령 개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있어서도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판단, DDA 협상에서 반덤핑 협상을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견지하려 하였으나,
- 본 의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,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국, 일본, 칠레 등의 주장을 수용하여 **현행 협정의 기본 개념 및 원칙, 실효성, 수단과 목적은 유지되는 선에서 개정을 수용하기로 합의**

□ 반덤핑 Friends 그룹 vs 반덤핑 조치의 주요 발동국

- 실체조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반덤핑 Friends 그룹과 절차조항의 개선만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이 대립
- 반덤핑 프렌즈의 구성 : 한국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태국, 브라질, 칠레, 멕시코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, 이스라엘, 노르웨이, 스위스, 터키, 대만 등
- 반덤핑 Friends 그룹, 반덤핑 조치의 주요 발동국인 미국, EU,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 등이 약 60여개의 개정 필요조항을 발굴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인 논의 진행

나. 협상 목표

□ 명료화 또는 개선 필요조항 발굴

-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르면 협상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을 포함한 명료화 또는 개선이 필요한 조항의 발굴을 목적으로 함.
- 후속단계(2003.9월 칸쿠회의 이후)에서 명확화 및 개선작업 시작

II.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.

※ 반덤핑 Friends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

가. 제로잉 금지 (TN/RL/W/113, JOB(04)/57)

※ 용어 정리

- ▶ 덤핑마진 (dumping margin) : 정상가격(NV) - 수출가격(EP)
- ▶ 제로잉(zeroing) : 덤핑을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의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관행, 따라서 동 관행 적용시 덤핑 마진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 초래
- ▶ 정상가격 : 동종상품(like products)의 수출국내 판매가격

□ 제안서 내용

○ 기본 원칙

- 반덤핑 조사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의 당해제품이 **전체적으로 (as a whole)** 수입국 시장에서 덤핑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"Fair Comparison"은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를 대상으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비교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제로잉은 모든 비교 방법 및 반덤핑 조사 절차에서 금지되어야 하며,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**단 하나의 (a single)** 덤핑 마진이 산출되어야 함.

○ 현행 반덤핑 협정의 문제점

- 현행 반덤핑 협정에는 상기의 기본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회원국들 사이에서 제로잉 금지 수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.

○ 개정안(AMENDMENT)

■ 제안 1 : 모든 반덤핑 절차에서 덤핑 마진 계산시 제로잉 관행을 금지

- 수출가격/구성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플러스 마진과 네거티브 마진이 합산될 수 있도록 제 2.4.2 조를 개정
- 원심 이후 제9조 및 11조에 명시된 재심(Reviews) 단계에서도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 2.4.2 조를 개정

■ 제안 2 :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하나의 덤핑마진(a single margin) 산출

- 덤핑마진은 조사기간 내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(a whole set of transactions) 계산되어야 함.
- 원심 및 재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나누어, 기간별로 덤핑마진을 산정한 후 동 결과를 합산시 플러스 마진을 마이너스 마진으로 상계하지 않는 것은 제로잉과 같은 결과를 도출
- 수출자가 원심 또는 재심의 조사 기간 중 일정 부분은 덤핑을 하였으나 조사 기간 전체로 볼 때 덤핑 마진을 발견되지 않았다면,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덤핑마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.

□ 주요국 입장

○ 미 국

- 덤핑거래가 덤핑되지 않은 거래에 의해 상계(offset)되어서는 안되고, 피해(injury)를 초래한 덤핑은 반드시 적절한 조치(condemned)가 필요함.
- 모델별로 덤핑마진을 산정할 경우 플러스 마진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은 수입국의 해당산업에 실질적인 피해(injury)가 가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므로 모델간 제로잉을 금지할 수 없다고 논박

- 모델간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, 덤핑되지 않은 모델로 인해 덤핑된 모델 (특히, 동 모델이 수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거나, 차세대 유망 新모델일 경우)의 덤핑마진이 상계(offset 또는 compensate)되어 non-dumping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 이는 수입국내 덤핑 모델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됨.

○ E C

- EC는 모델간 제로잉 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
- EC는 2003년 6월에 미국의 제로잉 관행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협의개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(WT/DS294/1)는 등, 금번 프렌즈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.

* WT/DS294/1

상기 문서를 통해 EU내 對美 수출기업들 중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로잉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을 추려내어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덤핑마진을 새로이 산정

ex) 미국은 네덜란드산 Hot-Rolled Carbon Steel Flat Products의 덤핑 마진 계산시 제로잉을 적용하여 2.59%의 덤핑 마진 산출. 그러나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거티브 덤핑마진이 산정되어 반덤핑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료되었을 것임.

(2001/11/29, US case number A-421-807, 66 FR 59565)

○ 중 국

- 2003년 3월 제출한 제안서(TN/RL/W/66)를 통해 제로잉 금지가 명시되는 방향으로 반덤핑 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힘.

나. 재심 (Reviews) (TN/RL/W/83, JOB(04)/59)

※ 용어 정리

- 재심 : 반덤핑 관세 환급, 신규수출자 관세부과, 반덤핑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반덤핑 조치 부과 후 다시 조사 개시
- de minimis(미소 마진) : 덤핑 마진이 2% 미만일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산업피해가 무시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덤핑조사는 즉시 종결
- new shipper (신규수출자)재심 : 특정 상품이 수입회원국에서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, 조사기간 중 동상품을 수입국에 수출하지 아니한 당해 수출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, 각자의 개별마진 산정을 위해 검토 요청

□ 제안서 내용

○ 기본 원칙

- 현행 반덤핑 협정의 제 9.3조(반덤핑 관세 환급), 9.5조(신규수출자 재심), 11.2(반덤핑 관세 철폐)에 의거한 재심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정 마련
- 원심시 적용되었던 규정을 재심시에도 그대로 적용

○ 현행 반덤핑 협정의 문제점

- 현행 협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심시에는 원심과 상당히 (substantially)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수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또한, 덤핑마진을 과대하게 산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더 큰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됨.

○ 개정안(AMENDMENT)

- ▶ 제안 1 : 현행 협정상 제2조(덤핑의 결정), 3조(피해의 결정), 4조(국내산업의 정의), 5조(조사개시 및 후속조사) 및 6조(증거)를 재심시에도 재심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, 그대로 적용토록 개정

- 특히 미소마진(de minimis) 규정과 제5.8조에 명시된 최소 규정(threshold)은 적당한 수준까지 재심시에도 그대로 적용토록 함.
- 그러나, 미소마진 규정은 제9.3조에 의거한 (반덤핑) 관세 환급 재심시에 반드시 그대로 적용토록 함. (현재 EC에서는 미소마진 규정을 준수)
- 제 2.4.2조에 열거된 3가지 방법 중 원심시 채택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비교방법은 수출자에 의해 별도의 방법이 요청되지 않는 한 재심시에도 그대로 이용되도록 함.

- 미국 상무부(DOC)는 원심과는 달리, 행정재심 시에는 조사기간 전반에 걸친 거래를 대상으로 산출한 (가중)평균 수출가격과 (가중)평균 정상가격(home market price)을 비교하지 않고,
- 대신 개별 수출거래의 순수출가격(net US price)과 동 개별 거래가 속한 달의(contemporaneous) 정상가격 월평균을 비교하여 거래별 덤핑 마진을 산정한 후 플러스 마진만을 더하여 최종 마진 산출

- ▶ 제안 2 : 제 9.3조 (반덤핑 관세 환급)에 의거한 재심(이하 행정재심)은 수출자와 수입자만이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

- 제 9.3조는 반덤핑 관세가 과대 예치(deposit) 또는 징수(collect)되었을 경우 환급 금액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.

- 관세의 예치나 징수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, 이에 따른 환급요청도 이들과 관련되었을 뿐, 국내 산업 및 조사당국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
- 국내산업의 요청에 의해 재심 절차가 개시될 경우,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게는 상당한 행정적·경제적 부담으로 작용
- ▶ 제안 3 : 행정재심시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,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출자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하되, 각 개별 수입이 아닌 전체 수입에 대하여 덤핑 마진을 계산
- ▶ 제안 4 : 피소자에게 불리하도록 재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개정
 - 제 9.3조, 11.2조에 따른 재심이 12개월 내에 종결되도록 하고
 - 재심 종료 후 9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하도록 개정
 - 제 9.5조에 따른 신규수출자 재심은 수출자로부터 절차 연장에 대한 요청이 없는 한, 재심 요청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종결토록 개정
- ▶ 제안 5 : 덤핑과 피해의 가능성(likelihood of injury)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적 기준(the harmonized indicative list)을 개발하여 반덤핑 조치의 지속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개정
- 덤핑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인 예시적 기준에 포함되어야 함.
 - (1) 덤핑마진은 원심 때 사용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상황 및 가격에 의거하여 산정되어야 함.
 - (2) 원심시 결정된 반덤핑관세 조치가 재심의 대상일 경우, 조사당국은 가장 최근의 재심에서 결정된 덤핑 마진에 근거함.
 - (3) 덤핑 마진이 없으면 “피해 가능성”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으며, 반덤핑 관세조치를 종료시킴.

- “피해 가능성(likelihood of injury)”평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인 예시적 기준에 포함되어야 함.

- (1) 수입에 의해서 야기된 피해의 가능성은 현재 국내산업과 관련된 수출자의 경쟁 상황에 의거하여야지 원심시 적용된 정보에 의거해서는 안 됨.
- (2) 조사당국은 추측(conjecture, speculation)이나 혐의(allegation)가 아닌 사실에 의거하여 제 3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
- (3) 조사당국에 의한 반덤핑 관세의 지속적 부과 여부 결정은 현재 덤핑된 물량의 규모에 근거해야 함.

□ 주요국 입장

○ 미 국

- 현행 협정상 재심과 관련된 명확한 준거 규정이 없으므로, 이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, 이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향상으로 해결 가능
- 즉, 원심과 재심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,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 하더라도 사전에 수출자가 알 수 있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침.
- 또한, 2% 미소마진의 재심적용 문제와, 수출입자만 9.3조 재심신청을 허용하게 하는 방안, 11.2조의 likelihood의 입증 책임을 조사당국에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

○ E C

- 원심과 재심이 100% 같은 것이 아니며, de minimis와 negligible imports(무시할 만한 수준의 수입량) 등을 예시로 듦.

- 협정 제 2조 - 6조를 재심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은 starting point로 좋으나, 구체적으로 재심에 특별한 규정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

○ 뉴질랜드

- 상기 다섯 가지 제안 중에서 소급적용 관세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둘째, 셋째를 제외한 첫째, 넷째 제안에는 동의를 표시하였고, 다섯 번째 제안도 좋은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견해 표명

다. Fair Comparison (TN/RL/W/158)

※ 용어 정리

- ▶ LOT : Level of Trade(거래단계)
- ▶ symmetric adjustment(대칭적 조정) : 현행 협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념으로 반덤핑 Friends 국가들이 협정내 동개념을 삽입하도록 주도하고 있음. 수출가격에서 직간접 판매비용 및 수익 등의 차감이 이루어졌을 경우, 정상가격에서도 같은 부류의 비용이나 수익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

□ 제안서 내용

○ 현행 반덤핑 협정의 문제점

- 반덤핑 협정 제 2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반드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에 “fair comparison”, 즉 판매가 동일한 단계(LOT)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적절한 Adjustments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- 그러나 동 협정 내용은 매우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하

고 있지 않아 조사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궁극적으로는 “fair comparison”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상존하므로 현행 협정 제 2.4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.

- 수출가격(EP)/구성수출가격(CEP) 과 정상가격(NV)을 동일 부류의 항목(예를 들어 간접 판매비용, 수익 등)에 대한 조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음. 정상가격에서는 직접 판매비용의 공제만 허용
- 수출가격 산정시에는 정상가격 산정 때와는 달리 비정상거래가 포함. 비정상거래는 다른 거래에서보다 판매가가 낮으므로 수출가격이 낮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는 덤핑마진이 과대계상
- 반덤핑 협정 제 2.4.2조에 명시된 3가지 방법 중 (ii),(iii) 방법은 조사당국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상존
- Model matching시 적용될 규정이 모호하여 “very closely resembling(매우 유사한)” 모델을 선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지 못함.

○ 개정안(AMENDMENT)

Issue 1 : 동일 판매 단계(the same level of trade)에서의 비교 - 수출가격(EP)/구성수출가격(CEP) 과 정상가격 비교

■ 제안 1-1 : symmetrical adjustment 적용

- 현행 협정 제 2.4조의 첫 번째 문장을 개정 : “fair comparison”을 위한 요건으로 symmetrical adjustment를 삽입
- “symmetrical adjustment”의 정의 추가 : 수출가격/구성수출가격 산출시 적용된 조정이 정상가격에도 적용 가능할 경우 정상가격에도 공평한(parallel)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, 조정액은 반드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해야함.

- 판매비와 수익에 관한 조정 : 수출가격/구성수출가격 및 정상가격 산정시 모든 판매비용 및 아래 참고 box에 적힌 방법을 참조하여 계산한 수익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 2.4조를 개정,

※ 개별 수익 산정방법

개별 CEP로부터 공제가 가능한 수익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산출됨.

- a) 수출업체가 모든 CEP 및 NV 판매를 위해 사용한 총 생산비 및 판매비용 대비 개별 CEP 판매를 위해 사용된 판매비용의 비율을 산출한 후,
- b) 이 비율에 모든 CEP 및 NV 거래를 통해서 거뒀던 수익을 곱하면 해당 CEP 판매비용에 할당된 수익, 즉 공제해야하는 수익 규모를 알 수 있음.

- 정상가격, 수출가격/구성수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요소 (starting price, adjustments to starting price)를 제시할 수 있는 annex 첨부

▶ 제안 1-2 : "Fair Comparison"(공정한 비교)의 책임

- "Fair Comparison"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조사당국에 있음을 명시하도록 제 2.4조를 개정
- US - Hot-Rolled Steel case 상소 판결(Appellate Body)을 통해 "Fair Comparison"의 의무가 수출자가 아닌 조사당국임이 확인된 바 있음.

Issue 2 : 비정상거래로 이루어진 수출판매의 제외

- ▶ 제안 : 수출가격/구성수출가격 산정시 비정상거래로 이루어진 수출판매를 제외할 수 있도록 협정 제 21조를 개정
- 샘플판매, 직원대상판매, barter sales, 추가공정을 위한 하청업체 대상 판매 (추후 하청업체로부터 재구매조건), 관계사 대상 판매, 원가이하판매 등은 비정상 거래로 간주하여 수출가격/구성수출가격 산정시 제외

Issue 3 : 제 24.2 조의 비교방법

▶ 제안 3-1 : 제 24.2 조에 열거된 3가지 방법 중 ii), iii) 삭제

※ 협정 제 24.2 조

- i) 가중평균정상가격 - 가중평균(구성)수출가격 (A-A)
- ii) 거래별 비교 (T-T)
- iii) 가중평균정상가격 - 개별거래 (A-T)

- 이 중 ii), iii) 방법은 조사당국에게 방대한 자의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있어서 예측불가능성을 제고시키므로 삭제

▶ 제안 3-2 : 모든 반덤핑 조사 절차에의 협정 제 24.2조 적용

- 원심 뿐만 아니라 재심 등의 절차에서도 제 24.2조를 동일하게 적용

▶ 제안 3-3 : 기간 (Time Periods)

- 자료수집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가중평균(구성)수출가격을 산출
- 자료 수집기간은 1년이어야 하며, “cyclical markets(경기순환 시장)”의 경우에는 전체 cycle을 고려

Issue 4 : Model Matching

▶ 제안 4-1 : 조사당국이 “동일하고(identical)”, “매우 유사한(very closely resembling)”모델의 기준(특징) 선정시 제한 ; “유사한” 모델로 간주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한 조치 부과

- 모델 매칭시 조사당국은 상업적 가치 또는 기술규격(technical specifications)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특성을 고려해야하고, 개별 특성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hierarchy 구성

- 모델 매칭 특징은 수출업체가 정상적인 영업 중 사용하는 제품 코딩(product coding)을 사용해야만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, 반드시 수출국의 산업 제품 표준(industry product standards)을 따라야 함.

▶ 제안 4-2 : 물질적 특성(physical characteristics)에 관한 참작(allowance)

- 단위당 가변비용이 다를 경우, 물질적 특성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.

▶ 제안 4-3 : 조사당국이 모델 매칭에 관하여 수출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의무화

□ 주요국 입장

○ 미 국

- 각국별, 시장별로 사업방식 및 거래유형이 다르므로 기계적인 symmetrical adjustments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. 이와 관련하여 현행 반덤핑 협정 제 2.4조에는 조사당국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(discretion)이 부여가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
- 수출가격 산정시 비정상거래를 제외하는 것은 수출거래가 수입국 산업에 injury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정상가격 산정시 비정상거래를 제외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견해를 밝힘.

○ E C

- 반덤핑 협정 제 2.3, 2.4조는 symmetrical adjustments와는 관련된 조항이 아님을 지적하는 한편, 덤핑 조사는 수익차별이 아닌 가격차별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
- 제안서상 제시된 6가지 비정상거래의 예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직원대상 판매 및 barter sales 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

- 반덤핑 협정 제 2.4.2조의 세 가지 방법 중 T-T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
- 모델 매칭과 관련하여 가격 비교가능성(price comparability)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 및 책임은 전적으로 조사당국에 있음을 재확인 하였으며, 물질적 특성 조정시 고정비용과 마크업은 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의문 제기

○ 인 도

- 현재 symmetrical adjustments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, 내수 판매와 수출시에 소요되는 판매비용이 상이하므로 symmetrical adjustments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.

○ 뉴질랜드

- 자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이거나 거래규모가 작을 시에는 T-T 방식이 적합하며, A-T 방식의 원천 봉쇄(Blanket ban)도 옳지 않다고 지적

○ 터 키

- "Fair Comparison"을 위해서는 동일한 거래단계에서의 비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, 이는 제안서 상의 symmetrical adjustments가 아님을 강조하였음.
- 그러나 모든 간접비용을 정상가격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

라. 정상가격 결정 (TN/RL/W/150, JOB(04)/58)

※ 용어 정리

- ▣ sufficient quantity test(viability test) :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수출국내 동종제품의 판매량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. 현행 협정에 따라 수출물량의 5%를 기준으로 하여 수출국내 판매량이 그 이상일 경우 수출국 당해 제품 시장이 충분히 큰 것으로 간주
- ▣ SG&A(Selling,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) : 일반 판매비
- ▣ GAAP(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) :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
- ▣ knowledge test :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(respondents)가 판매시점 당시 동제품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

□ 제안서 내용

○ 기본 원칙

- 기업은 개별 거래(transaction-specific)가 아닌 제품라인(product-line)에 기초해서 수익성 계산
- 기업은 가끔 손실(at a loss) 또는 수익이 없는 상태(at no profit)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상가격 산정시 반영
-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실질적으로 인지·통제하며 실제가격결정관행과 관련된 자료에 기초하여 덤핑여부를 판단해야함. 즉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정상영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가회계기준을 준수

○ 현행 반덤핑 협정의 문제

- 현행 반덤핑 협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, 조사당국이 정상가격 산정시 고의적으로 값을 부풀리게 할 수 있는 여지 제공

○ 개정안(AMENDMENT)

Issue 1 :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충분한 국내 동종 제품의 판매량 정의

▶ 제안 1-1 : Sufficient test (viability test)

- 조사기간 동안 비정상 거래를 포함한 당해 수출업체의 모든 판매량을 대상으로 하여 테스트가 실시되도록 footnote 2 개정

- “국내 판매용으로 생산된 동종 제품” 구절의 국내 판매를 다음과 같이 명료화

: 수출업체가 판매시점에 당해 제품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 한 수출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판매를 지칭

▶ 제안 1-2 : 특정 시장 상황 (Particular Market Situation) 관련 내용을 제 22조에서 삭제

- 제 22조에서는 “특정 시장 상황”으로 인해 적절한 판매비교가 불가능할 시 구성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을 이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“특정 시장 상황”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WTO 내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- 또한 동 제안서를 통해 비정상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exhaustive list가 제공된 바, 동조항의 필요성이 사라짐.

Issue 2 : 동종제품의 정상거래

▶ 제안 2-1 : 동종제품의 정상거래

- 샘플판매, 직원대상판매, barter sales, 추가공정을 위한 하청업체 대상 판매 (추후 하청업체로부터 재구매조건), 관계사 대상 판매, 원가이하판매 등을 제

위한 모든 거래를 정상거래로 간주함으로써 수출업체나 조사당국 모두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

▶ 제안 2-2 : 원가 이하 판매관련 협정 제 221조 개정

- 조사기간 내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총수입이 총비용(판매비용 포함) 이하일 경우, 조사기간 내 모든 수출국내 거래 또는 제 3국으로의 수출거래를 비정상거래로 간주하여 정상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. 그렇지 않을 경우, 가격을 이유로 수출국내 거래 또는 제 3국으로의 수출거래를 정상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.
- 조사개시 당시, 조사당국은 수출업체가 실질적인(substantial) 양을 원가 이하로 판매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, 수출업체의 생산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 제한, 실질적인 양은 Y%로 규정

Issue 3 : 조사당국이 원가관련 자료를 요구·사용할 수 있는 권리

▶ 제안 3-1 : 자료수집 기간과 조사기간

- 수출업체와 가장 근접한 회계연도(1년)를 기준으로 하나, 수출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cyclical(경기순환) 제품은 경기순환 전반에 걸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 가능

▶ 제안 3-2 : GAAP에 부합된 수출업체의 자료 인정

- 조사당국은 수출업체가 제출한 생산 및 판매 자료가 GAAP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다면 그대로 수용해야함.
- 그러나, 수출업체가 조사당국이 요구한 것 이상의 구체적인 단위당 생산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허용

Issue 4 : 구성가격

▶ 제안 4-1 : 구성가격이나 대체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 자료의 사용

- 협정 제 2.2.2조에 명시된 (i)만을 허용하고 (ii),(iii) 삭제

※ 협정 제 2.2.2 조

- (i)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내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, 실현된 실제 금액
- (ii) 조사 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, 실현된 실제 금액
- (iii)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. 단,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.

- 수출업체가 국내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, 수출업체의 비연결 재무제표상의 판매 원가 및 이윤을 사용토록 (ii) 항을 신설

▶ 제안 4-2 : 원가 이하 판매 포함 ; 구성가격에서의 수익

- 수출국내 총판매가격이 총비용보다 작을 경우, 구성가격에서의 수익을 “0”으로 처리

▶ 제안 4-3 :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비용 (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)

-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비용은 판매와 무관하므로 원가미만 테스트나 구성가격 산정시 제외

□ 주요국 입장

○ 미 국

- 5% sufficient test에 대해서는 동의하고, 동 테스트의 목적은 시장이 viable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이뤄져야함을 덧붙임. 그러나, 국내 판매 이후 바로 수출되는 판매를 동 테스트의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
- 제안서상 열거된 리스트로 비정상거래를 제한한다는(exclusive)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
- 원가이하판매 테스트를 조사기간 내 전 거래를 대상으로(aggregate level)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테스트 이후에는 모델별 비교(model specific base)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전거래 대상 원가이하 판매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후, 현행대로 모델별 테스트를 고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힘.

○ E C

- 5% sufficient test에 대해서 동의를 표한 후 조사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함을 강조
- 그러나, 테스트 실시 후 정상거래를 제외한 잔존거래가 소수일 경우, second test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, 동 거래들만을 대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수출업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second test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 표명
- 원가이하판매 테스트와 관련하여 이번 제안은 현행 협정상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행 반덤핑 협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모델별(model specific) 테스트를 고수한다는 입장

○ 호 주

- 5% sufficient test 시행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
- 제안서상의 비정상거래 리스트와 관련하여, 제한적(exclusive)인 리스트 보다는 예시적인(indicative) 리스트가 더 낫다고 언급하고 리스트에 sales of damaged goods, sales of second quality goods, sales of discounted goods 등이 추가될 수 있음을 제시
- 수출업체의 자료인정과 관련하여, 일부 수출업체들은 단위당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,
-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원가이하판매 테스트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

III.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

가. 향후 전망

☐ 기한 내 협상 타결 전망 미지수

- 칸쿤 협상 결렬로 인해 당초 협상 시한인 2004년 12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
- 협상 개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은 여전히 협상 진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.

☐ 미국 협조가 관건

- 기 제출된 반덤핑 Friends의 제안서 내용 중 상당부분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현행 반덤핑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요하므로, 철저적인 조항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금번 협상 취지에 맞지 않는 다며 반대 입장 표명
- 반덤핑 Friends 측의 협정 개정안을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보다는, 협상 진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 낼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, 미국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, 향후 제안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협상 가능성을 제고한다면 기한 내 협상 타결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나. 우리의 대응 방안

☐ 업계 요구 반영

- 해외주재기업이나 국내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발굴하여 향후 반덤핑 Friends 제안서 작성시 반영
-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가장 크게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조항을 우선적으로 발굴한 후, 이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,
- 제안서상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.

☐ 이슈별 협력체계 구축

- 반덤핑 Friends 국가는 아니나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가 우리와 일치하는 국가와 공조할 필요가 있음.
- 우리는 EC와 함께 미국 “제로잉” 관행을 WTO에 공동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(그러나 실제로 공동제소에 참여하지는 않았음.)

☐ 협상에 대한 인식 제고 급선무

- 세계 제 2위 수입규제 피소국임에도 불구하고, 규범협상에 대한 인식 미흡
- 우리나라는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의 반덤핑 건수는 182건, 상계관세는 13건을 기록해 세계 2위의 피소국으로 나타남.

- 그러나, 협상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 대상에서 소외
- 따라서, 규범 협상 개정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임을 감안, 좀 더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.